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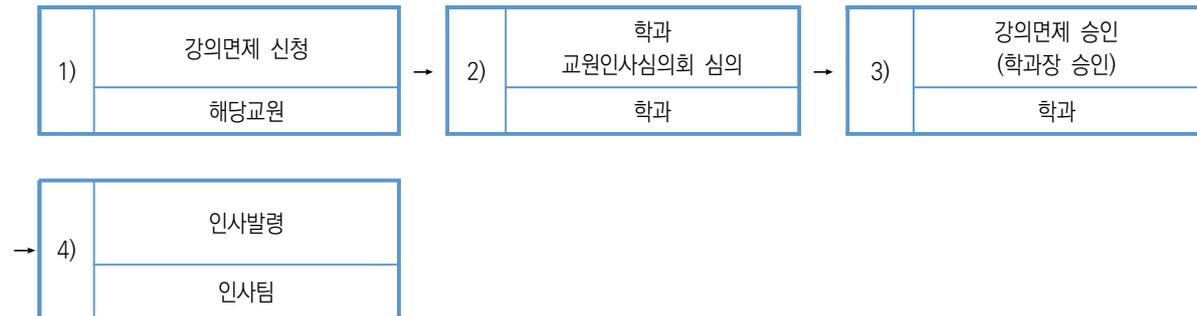
업무구분	단위업무	1.5 전임직교원 복무 - 강의면제		
교원인사	작성일자	2021.9.	연락처	2491

1. 업무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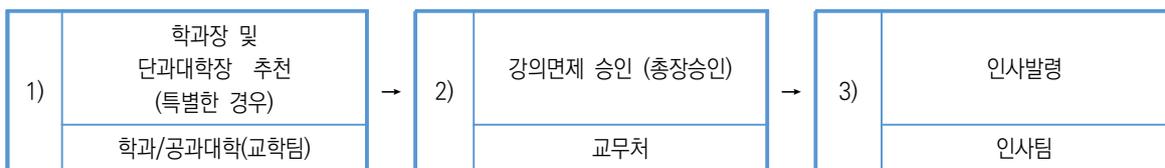
- 가. 업무내용 : 공과대학 소속 교원의 복무에 관한 주요 업무 중 교원의 강의면제에 관한 활동을 승인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한 업무
- 나. 발생시기 : 년중
- 다. 관련근거 : 교과과정운영지침 제22조

2. 업무처리절차

- 1) 6년 이상 근속 전임직 교원



- 2)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



3. 업무처리내용

- 1) 6년 이상 근속 전임직 교원
 - 학과 교원인사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학과장의 승인으로 최대 1년간 강의의 전부면제, 이 경우 근속년수의 계산은 연구연가 시행지침 제2조를 적용함.
- 2)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
 - 학교 또는 학과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강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.

4. 관련 규정

가. 교과과정운영지침 제22조

5. 활용서식

가. 강의면제 신청서

6. 기타 주요 참고사항